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074호, 2024. 1. 23. 공포, 7. 24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0. 0. 공포, 2024. 7. 2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생전 안장심의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4.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: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

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“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질병으 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: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